

위험물의 포장·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

(제210조제2항 관련)

1. 용지 및 건물 면적

가. 시험실(화학분석실 용지는 제외한다): 231제곱미터

나. 사무실: 66제곱미터

2. 시험항목별 시험기기

시험항목	시 험 기 기	수	비 고
시험환경 및 사전처리	· 항온항습실(고정) · 항온항습기(work in chamber)	· 1실 · 1대 이상	(온도: $-30^{\circ}\text{C} \sim 60^{\circ}\text{C}$ / 습도: 0%~98%)
낙하시험	· 정밀낙하시험기 · 중량물낙하시험기	· 1대 이상 · 1대 이상	
적재시험	· 적재시험기 또는 하중 추	· 1대 이상	
수압시험	· 수압시험기	· 1대 이상	
기밀시험	· 수조/기밀시험기	· 1대 이상	
흡수도시험	· 코브법 테스터(Cobb Method Tester: 종이 또는 판지의 물 흡수도 시험기)	· 1대 이상	
기타시험	· 진동시험기 · 자력측정기(Gauss meter) · 강봉(Steel Rod)	· 1대 이상 · 1대 이상 · 1대 이상	

비 고: 화학성분 정성 및 정량분석 시험기[제시된 UN No. 및 성능분석(MSDS) 등의 확인 또는 하주 의뢰 시 확인시험]

- ICP(고주파 플라스마 발광분석기)
- GC-MASS(가스크로마토그래피/질량분석기)
- LC-MASS(액체크로마토그래피/질량분석기)
- FT-IR(적외선분광분석기)

3. 시험검사원

가. 시험검사책임자: 시험검사소당 1명

나. 전문시험검사원: 2명